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·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애인 등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.
2. “공공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
 - 나.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

제3조(적용범위)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만 한정한다.

제4조(사전공고)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(이하 “기관장”라 한다)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전에 군 공보·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약신청)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우선계약) ①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 순위에 따르고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내로 하고 관리·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계약자의 의무)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계약의 해지) ①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제7조를 위반한 경우
2.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
3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
4. 공익상 필요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폐지하는 경우
5.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

② 제1항제1호, 제2호, 제5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.

제9조(사용료)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에 따르고 전기 사용료 등은 사용금액을 징수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계약만료일까지 인정한다.

[별표]

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

대상 순위	장애인	65세이상 노인	한부모가족지 원법	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	장애등급 1~3급 으로 국민기 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부양가족 2인 이상 자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2	장애등급 4~6급 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65세 이상 70 세미만 노인 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부양가족 2인 미만 자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
3	장애등급 1~6급 일반장애인	65세 이상 일반노인	일반 한부모 가족	